의안번호	제167호

- 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10. 14.

- 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

민 간 위 탁 동 의 안

의 안 번 호	제167호

제출일 : 2021. 10. 14.
제출자 : 논산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도입으로 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질적·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사무)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 CCTV 통합관제센터
○ 위탁기간
  - 현재 : 2019. 01. 01. ~ 2021. 12. 31.(3년간)
  - 향후 : 2022. 01. 01. ~ 2024. 12. 31.(3년간)
○ 사업범위 :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 사업내용 : CCTV 관제실 24시간 영상관제업무 수행으로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112신고, 119신고 등)
○ 소요인원 : 20명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5명, 4조3교대
○ 위탁근거
  -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17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에 의함

3. 민간위탁 추진 현황

□ 위탁기간

- 2019년 : 2019. 01. 01 ~ 2019. 12. 31.
- 2020년 : 2020. 01. 01 ~ 2020. 12. 31.
- 2021년 : 2021. 01. 01 ~ 2021. 12. 31.

□ 위탁기관

- 2019년 : 한빛티엠에스 대표 박순이
- 2020년 : 팔도안전시스템 대표 김성률
- 2021년 : 태성종합건설 대표 이경선

□ 위탁금액

- 2019년 : 1년간 770,887천원
- 2020년 : 1년간 801,418천원
- 2021년 : 1년간 812,301천원

□ 업무범위

❍ 관제실, 영상검색실, 휴게실, 장비실, 남·여탈의실 등

□ 예산집행 현황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고
	합 계	고정비	변동비	
2019년	770,887	750,219	20,668	
2020년	801,418	800,964	454	
2021년	**812,301**	**536,284**	**276,017**	**8월 현재**

❍ 예산집행실적

< 2019년도 >

(단위 : 원)

구 분			예산금액	정산지출금액	증감	비 고
고정비	인건비및보험료	직 접 인 건 비	539,743,920	507,768,311	감)31,975,609	
		보 험 료	97,699,200	89,354,700	감)8,344,500	
		소 계	637,443,120	597,123,011	감)40,320,109	
순 원 가			637,443,120	635,749,540	감)1,693,580	
일 반 관 리 비			25,497,600	25,497,600	0	
이 윤			32,086,170	32,085,990	감)180	
총 원 가			695,026,890	693,333.130	감)1,693,710	
부 가 가 치 세			69,502,680	69,333,322	감)169,358	
기 타 경 비			6,357,600	6,357,600	0	
계			770,887,170	750,218,910	감)20,668,260	원단위 절사

- 2019년 예산집행실적은 총 770,887천원의 위탁 비용에서 정산 비용을 정산하고 총 750,218천원 집행하여 20,668천원 비용 절감

<2020년도>

(단위 : 원)

구 분			예산금액	정산지출금액	증감	비 고
고정비	인건비및보험료	직 접 인 건 비	558,489,600	558,077,330	감)412,270	
		보 험 료	102,254,400	102,254,400	-	
		소 계	660,744,000	660,331,730	감)412,270	
순 원 가			660,744,000	660,331,730		
이 윤			34,357,209	34,357,200	감)9	
일 반 관 리 비			26,700,000	26,700,000	-	
총 원 가			721,801,209	721,388,930	감)412,279	
부 가 가 치 세			72,856,201	72,814,920	감)41,281	
기 타 경 비			6,760,800	6,760,800		
계			801,418,210	800,964,650	감)453,560	

- 2020년 예산집행실적은 총 801,418천원의 위탁 비용에서 정산 비용을 정산하고 총 800,964천원 집행하여 453천원 비용 절감

<2021년 8월>

(단위 : 원)

구 분			예산금액	정산지출금액	증감	비 고
고정비	인건비및관리비	직 접 인 건 비	567,388,320	282,046,660		
		보 험 료	103,886,400	51,943,200		
		소 계	671,274,720	333,989,860		
순 원 가			671,274,720	333,989,860		
이 윤			34,905,844	17,367,580		
일 반 관 리 비			26,847,600	13,359,680		
총 원 가			733,028,164	364,717,120		
부 가 가 치 세			73,302,816	36,471,920		
기 타 경 비			5,970,480	2,985,240		
계			**812,301,460**	**536,283,930**		**8월 까지**

❍ 민간위탁 운영 실적

< 영상자료 제공건수 >

(단위 :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현재)	비 고
영상제공	754	888	325	사건·사고영상 제공

< CCTV 모니터링을 통한 현행범 검거 및 탐지 건수 >

(단위 :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현재)	비 고
탐지건수	75	84	57	
검거건수	1	1	1	

4. 민간위탁시 운영성과평가

1 시설관리 성과 평가

구 분	운 영 성 과 평 가	비고
시설 및 장비 관리 상태	• 관제실, 재난종합상황실, 영상검색실, 장비실, 자재실, 휴게실, 남자탈의실, 여자탈의실 등 시설과 장비의 수시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상태 유지	

2 예산활용 성과 평가

구 분	운 영 성 과 평 가	비고
운 영 비 증감 실적	• 2019년 대비 2020년 인건비 등 지출비용이 약 1.1%정도 절감 • 2020년 대비 2021년 인건비 등 지출비용이 약 2.0%정도 절감 • 2021년 : 집행중	

3 인력활용 측면

구 분	운 영 성 과 평 가	비고
인력의전문성 확 보	• 모니터 감시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춘 자로 자격보유자 채용 및 활용	

4 관리운영 성과 평가

구 분	운 영 성 과 평 가	비고
이 용 자 안전대책 마련 실 적	• 월1회 보안교육 실시 : 총28회 (2019년:9회, 2020년:9회. 2021년:7회) • VDT 증후군 예방 방법교육 • 개인정보 처벌규정 교육 • 관제모니터요원의 임무 및 근무수칙 교육  	
안전사고 발생 건 수	• 안전사고 발생 건수 없음	

⑤ 기타

구 분	운 영 성 과 평 가	비 고
위탁 조건 이행 정도	• 위탁조건 이행상태 매우 양호함	
지도점검시 지적 정도	• 위탁사용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즉시 이행	
위탁기간 중 수범 실적	• 소방서, 경찰서 신고건수 : 216건(2019년01월 ~ 2021년7월말) • 절도 및 폭행 등 발견 신고 검거 3건 • CCTV 카메라 파손 수리 10건	

5. 민간위탁시 운영 방안

○ 현재 민간위탁기간 : 2019. 01. 01. ~ 2021. 12. 31.(3년간)

→ 향후 민간위탁기간 : 2022. 01. 01. ~ 2024. 12. 31.(3년간)

○ 사업범위 :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 사업내용 : CCTV 관제실 영상관제 및 사건사고 발견시 112신고 등

○ 소요인원 : 관제요원 20명 5명 4조3교대

○ 위탁근거

–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17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에 의함

○ 소요비용 : 997백만원(원가산정용역 결과) (단위 :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산출금액 (1인/월)	비 고
인건비	기 본 급		9,950원 × 209시간	2,079,500	2022년도 최저임금(시급) 8,730원 월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48시간×(365/7)/12=208.57시간
	제수당	야 간 수 당	월평균 7.5일×8시간×최저임금×0.5	298,500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무수당	월평균 8시간×최저임금×1.5	119,400	근로기준법제56조
		연 차 수 당	월1회(26일 기준)	172,810	근로기준법 제60조
		법정휴일수당	근로자의 날 년 1회	9,950	근로기준법제56조
	소 계			2,680,160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인건비/12월	223,35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연말 후 청구
	국 민 연 금		인건비 × 4.5%	120,600	국민연금법 제88조
	건 강 보 험		인건비 × 3.335%	89,380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3조,시행령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10.25%	274,7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고 용 보 험		인건비× 0.8%	21,440	고용보험법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단위절사)
	산 재 보 험		인건비×1%	26,800	
	소 계			756,290	
순 원 가			인건비+보험료	3,436,450	
일 반 관 리 비			순원가 ×4%	137,460	지자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이 윤			(순원가+일반관리비)×5%	178,690	지자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총 원 가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3,752,600	
부 가 가 치 세			총원가 × 10%	375,260	
합 계 (1 인)			**총원가+부가가치세**	**4,127,860**	**월 1인 용역비 (원단위절사)**
기타경비	피 복 비		60,000원 ×2벌(동,하복)	10,000	연 2회 20명(2,000,000원)
	강 사 료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 외래강사 지급기준	1,500	연 4회 1명(360,000원)
	교 육 비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6,670	연 4회 20명(1,600,000원)
	조 별 조 장 수 당		50,000×4×12월	10,000	월 1회 4명(2,400,000원)
	소 계			28,170	
월 간 합 계 (1 인)			**총원가+부가가치세+기타경비**	**4,156,030**	**월 1인 용역비**
연 간 합 계 (1 인)				**49,872,360**	**연 1인 용역비**
통합관제센터합계(20인)				997,447,200	연 20인 용역비 (천단위이하 절사)

○ 타 시군 설치 운영현황

자치단체	구축 시기	운영 대수 (대)	모니터(관제) 인원					
			인원 (명)	근 무 형 태	운영방식 (민간/직영)	1인당 관제수 (명)	1인당 인건비 (원)	비 고
천안시	2007년	5,547	16	3조 2교대	용역	388	43,080	
아산시	2007년	2,427	16					
홍성군	2012년	1,319	20	4조 3교대	공무직	209	49,500	
태안군	2012년	1,432	24	4조 3교대	용역	291	30,160	
청양군	2014년	1,524	20	4조 3교대	용역	260	30,420	
계룡시	2014년	548	8	4조 3교대	공무직 청원경찰	290	38,298	
공주시	2013년	1,533	20	4조 3교대	용역	441	30,000	
보령시	2014년	2,501	22	4조 3교대	공무직	400	42,800	
논산시	2015년	1,429	20	4조 3교대	용역	285	40,615	
서산시	2016년	2,600	20	4조 3교대	용역	580	35,269	
금산군	2016년	1,308	21	4조 3교대	용역	200	30,000	
부여군	2016년	730	20	4조 2교대	용역	134	33,264	
서천군	2016년	797	12	4조 3교대	공무직	250	33,240	
당진시	2016년	1,390	20	4조 3교대	공무직	278	45,600	
예산군	2016년	1,003	20	4조 3교대	용역	200	42,000	

6. 실무부서 검토의견

○ 시에서 직접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관리하게 되면,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기준 인건비제도에 압박을 가하고 행정조직이 비대화 되며, 또한 단순하고 경직되게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 낮아지게 됨.

○ 반면에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다양한 통합관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다양한 기술축적과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효율성 제고와 기술축적 및 노하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1. 10. .

안전총괄과장 강 선 환

관련 법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운영 및 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충청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 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5.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17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관제, 유지보수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 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7.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